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강 원식 · **최 윤규 · **김 영두 · † 조 익순

*,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연구원, †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교수

요 약 : 해상교통안전진단서행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현황과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및 확대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제출 면제 의견서, 사례분석, 제도 활성화 방안, 전문기관 역할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 강원식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주저자)
- 김영두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 최윤규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 조익순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교신저자)

서론

예상교통안전진단

예사안전법 제2조(정의)
 “**예상교통안전진단**”이란 예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행안전 위협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것

예사안전법 제15조(예상교통안전진단)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아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에 따른 예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예사안전법 제16조(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사업자는 예사안전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선박동양안전, 제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하여 긴급이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이거나 그 밖에 선박의 동양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예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관계기관 검토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관할 지방해양안전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서 제출면제 사업 업무흐름(범역 근거)

사업자 ↔ 관계기관 검토요청 ↔ 관계기관 검토의견 통보 ↔ 관할 도선사회의
 (관계기관 검토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통보)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 제출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

- 사업의 목적
- 사업의 내용
-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 예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 관계기관 검토사항

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현황

2012.8.31 기준

대상사업	사업유형	사업자유형	관리수칙 여부	관리인력 보유	관계기관 검토서 제출 여부	실시형태	비고
여수 대경도-홍안읍 우두리 예객터미널 건설	시설물 설치	공공기관	X	X	전문기관	전부위탁	
장기도 여객선 안전시설 보강공사	부두개발	지방청	X	O	한국해양포항 안전본부	사업자 직접	· 관리연비 1억 5천만
고창 내륙도 농어촌 민화사업 예객터미널 공사	시설물 설치	공공기관	X	X	전문기관	전부위탁	
광안 태안2교 가설공사	시설물 설치	일반기업	O	O	전문기관	부분위탁	· 관리연비 1억 1천만 · 예상교통조사 부분위탁
명덕 단대안 외곽시설 설치	부두개발	일반기업	O	O	전문기관	사업자 직접	
영동-교야 부해관 건설	시설물 설치	공공기관	O	O	전문기관	부분위탁	· 예상교통조사 부분위탁
대안면 국제여객부두-터미널 육로 기존 및 임시설계	부두개발	지방청	O	O	사업자 임의 선정(부작업)	전부위탁	· 사업자 임의로 관계기관 선정, 국경개 직영
부산영 안전 개편타이니 터미널 육로공사	부두개발	공공기관	O	O	전문기관	사업자 직접	· 개편과 안전관리기준 제정에 반영된 사업 · 기존개과 안전서 제출 문영안전영향기 수정
포항 영일안 여객터미널, 어양방파제 및 막개개 육로	시설물 설치	지방청	O	X	포항 도선사회	사업자 직접	· 기 수정된 용역보고서 사용

* 주 저 자 : 강원식, wskang84@kst.or.kr
 † 교신저자 : 조익순(중신회원) ischo@hhu.ac.kr

제출 면제 의견서 포함 사항

2012.8.31 기준

대상사업	사업명요	진단서 제출에 필요한지 이치한 사유	제출 면제 요사	해당 공통 요사	이용자 의견수렴	안전단체 수렴	비고
여수 대경도-물안울 우두리 해저케이블 건설		0	0	0	0	0	· 인부위탁
경기도 여객선 철안시설 보강공사		0	0	X	0	X	· 의견서 일련도 제외 및 안전요원 포함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예상 공통특성 파악
고양 내륙도 놓이른 천외사업 해저케이블 공사		0	0	0	0	0	· 인부위탁
광양 태안2교 가설공사		0	0	0	0	0	· 부분위탁 · 부두 단계가 확정된 수협
평택 당진간 외곽시설 설치		0	0	0	0	0	· 국토해양부 예산영입 통제자로 사용하여 공통특성 수렴 · 부두 단계가 확정된 수협
영동-교야 구배관 건설		0	0	X	0	X	· 부분위탁 · 예산영입도 의견 수렴 누락
대전광역시객사부도· 터미 널 확포 기본 및 실시계획		0	0	0	0	0	· 인부위탁
부산광역시 계천터미널 터미널 확포공사		0	0	0	X	0	· 당원기본계약 당시 수렴된 시설 레이아웃 자료 사용
포항 영일만 어촌출양장, 어항방파제 및 방파제 확포		0	0	X	0	0	· 기 수립된 예산공통특성, 예상 공통특성도 평가 자료 사용

KST 예산안전연구원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주요 사례

'오' 해저케이블 공사

- 사업의 위치와 성격 : 관리수역 밖에서 관리선박이 통행하지 않는 수역
- 안전진단대행업자 의견서 작성 대상
- 의견서 구성 : 개요, 자연환경 조사· 분석, 예상교통환경 조사· 분석, 이용자의견 수렴, 결론
- 총 130여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 제출

'드' 여객부두· 터미널 확포 공사(PONTON 설치 공사)

- 사업의 위치와 성격 : 부두의 용도 변경을 위한 PONTON 설치 공사
- 안전진단대행업자 의견서 작성 대상
- 의견서 구성 : 사업의 목적, 개요 및 내용, 제출 면제 사유, 예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조사, 예상교통특성 분석, 항로설계기준 및 계류안전성 검토, 관계자 의견 수렴), 안전대책
- 변경 대상선박이 기존 통항선박보다 규모가 작고 통항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음

KST 예산안전연구원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제도 운용상 문제점

1. 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사업자가 안전진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를 작성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사업자가 지방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진단대행업자가 수행
2. 사업자가 안전진단에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을 진단대행업자에 위임, 안전진단을 사업의 여가 받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여 실제적인 공사의 시행 주체인 사업자가 안전한 예상공사를 시행할지 의문
3. 구 지침에서 시행하던 자체(간이)진단을 진단서 제출 면제사업으로 제도 개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기존 자체(간이)진단과 다를 바가 없음,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제도의 효용성이 제고됨
4.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검토를 위해 의견서 작성시 작성기준이 없어 필요하지 않은 진단 항목들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손실 발생

KST 예산안전연구원

안전진단서 제출면제 사업 업무흐름(현실적)



KST 예산안전연구원

예결 방안 제시

1. 예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을 아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 안전진단의 개념, 진단서 제출 면제 사업의 의미, 의견서 작성 요령 등
 -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사업 유사 사례 소개 등
2. 의견서 범위 결정을 통해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에 포함될 항목 결정
 - 사업의 특성과 면제 사유에 맞는 실제적인 내용의 의견서 작성
 - 사업자가 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3.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활성화
 - 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결정에 대한 구체화
 - 진단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견서 작성 기준 마련

KST 예산안전연구원

1 사업자에 대한 교육

- 예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
-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도에 대한 불만
- 진단대행업자가 대신 수행, 안전진단에 대해 무관심 → 우려만의 제도

- 진단서 제출 면제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 진단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적 → 예상공사의 연속성
- 사업자가 진단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고 진단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마련과 홍보에 적극적 노력
-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진단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KST 예산안전연구원

2. 제출단계 의견서 범위 결정

- 애상공사의 다양성 → 제출단계 의견서 양육의 경영화가 어려움
- 경영화된 틀의 부재 → 사업자는 안전진단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항을 의견서에 첨부 → 시간적·경제적 손실 발생
- 정식진단의 경우 지침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를 통해 사업성격 및 애역 특성에 적합한 안전진단 항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정성이 있는 기관에서 예비조사(사전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의견 제시
- 애당애역의 교통량에 따라 애역이용자 의견수렴의 비용을 조절하여 불필요한 자연환경조사와 교통조사 등의 항목이 시행되지 않도록 함

KST 애사안전연구원

3. 제도의 정비

- 사업자 및 관계자(신규 진단인력 등)에 대한 교육 → 교육환경 및 법적 근거 미비
- 안전진단서 제출 단계사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애당유무 판단이 어려움
- 진단서 제출 단계 의견서의 작성기준 결여 → 의견서의 내용 부실
- 도로교통안전진단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교통안전진단을 아려는 자의 교육·훈련) → 교육시행의 근거가 되어 필요에 따라 교육 시행 가능
- 안전진단서 제출 단계사업 기준(지침 별표 4)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진단서 제출 단계사업 기준에 대한 구체화
예) 사업자가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진단서 제출 단계 의견서 작성기준 마련(예)

KST 애사안전연구원

진단서 제출 단계 의견서 작성기준(안)

항목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위치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가. 관련 범위 검토
애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가. 애상교통으로 편속 조사 및 분석 1) 권리구역 내 - AIS, 레이다 및 육안 편속을 통한 교통량 및 교통흐름 분석 (정식진단의 기술기준(지침 별표 3)의 애상교통조사와 동일하게 적용) * 사업으로 인한 통행량 변화가 미미하고 애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애역 이용객의 의견수렴으로 대체 가능 - 애역 이용객의 개원, 양로도 등의 자료를 통한 애상교통 흐름 분석 2) 권리구역 밖 - 애역 이용객의 개원, 양로도 등의 자료를 통한 애상교통 흐름 분석 나. 애역이용객 의견수렴 1) 권리구역 내 - 지방애상안전경, 애당애역 도선사직, 애상교통관리센터, 애역 이용 운영전사 운영담당자, 주요 통행선의 운영관리자 혹은 선장 2) 권리구역 밖 - 지방애상안전경, 애당애역 관할 애상경찰서, 한국애운조합지부, 애운계정 혹은 애선 선장, 주요 통행선의 운영관리자 혹은 선장 다. 애상교통 특성 분석
안전대책	가. 공사 중 안전대책 나. 완공 후 안전대책

KST 애사안전연구원

결론

안전진단서 제출 단계사업 제도의 활성화

- 교육 등 애인책자원의 육성 및 사업자의 관심 유도
- 애역 특성에 따른 제출 단계 의견서 범위 결정 및 애역 이용자 의견수렴 강화로 제출 단계 의견서 작성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방지
-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진단제도에 참여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 교육 제도 마련, 진단서 제출 단계 기준 구체화, 면제 의견서 작성기준 마련 등의 제도정비를 위한 정책 제언

↓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및 강화

KST 애사안전연구원